

제 29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4. 1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4월 18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3 - 53
- 나. 발 의 자: 고찬양 의원 외 4명
- 다. 발의일자: 2023년 4월 7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2. 제안이유

강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의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나.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안 제4조 ~ 제6조)
- 다.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예산지원 (안 제7조 ~ 제9조)
- 라.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홍보 (안 제10조 ~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5조, 제20조
-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 다. 해당부서: 가족정책과
-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4. 10. ~ 4. 14.)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 관련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에서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 용어의 정의

- 1인가구: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
- 1인가구 정책: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시행[1년 단위], 실태조사[연령별,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업

- 안 제8조는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안 제9조는 조례안의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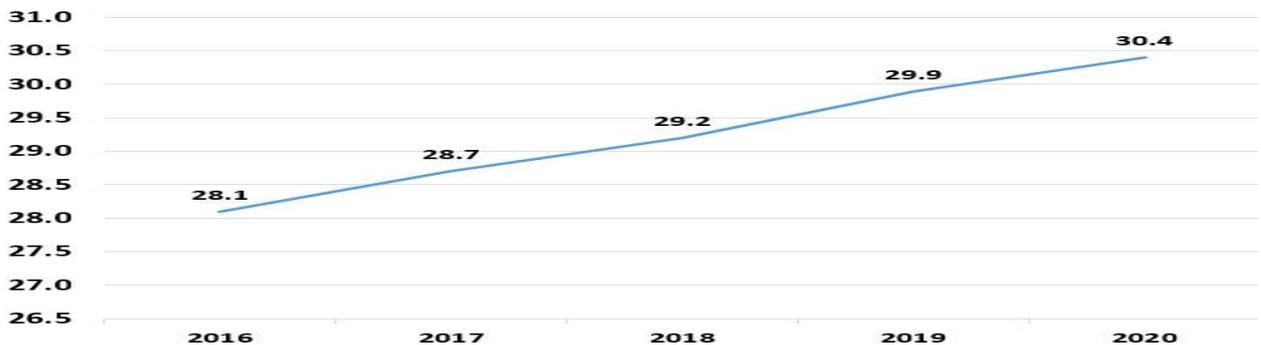
- 본 조례안은 초혼연령의 상승, 인구의 고령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¹⁾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1) 반은석·김동재, “1인 가구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고양시 1인 가구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부동산경영』 제15집(2017. 6),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우리 구의 세대당 인구 수는 2.55명[2011년]에서 2.17명[2020년]로 감소²⁾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1인가구 비율은 무려 37.3%로, 우리나라의 1인가구 증가세³⁾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에서 실시한 복지실태조사⁴⁾에 따르면,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한 점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32.5%), ‘외로움’(23.3%), ‘경제적 불안감’(20.3%) 순으로 나타났는데
- 이를 가구 구성별로 살펴보면, 청년가구는 ‘위급상황에 대처 어려움’(42.1%), 중장년 가구는 ‘외로움’(33.1%), 노인가구는 ‘경제적 불안감’(34.3%)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에서도 이를 위한 조례제정⁵⁾과 전담팀 신설이

2) 출처: 제35회 2020 강서통계연보, 강서구청 홈페이지-인구통계자료실

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0), 1인가구 현황



4)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2020), 「2020년 서울복지실태조사」

5) 서울시 자치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현황

[2023. 2. 1.기준]

- 제 정: 18개구(광진구, 은평구, 중랑구, 마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종로구, 동대문구,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 미제정: 7개구(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송파구, 강남구)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2023. 1. 1.)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여기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단절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 본 조례안은 좀 더 나아가 1인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다각도의 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1인가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지원 사업의 꾸준한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